



# 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소송사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건의

1. 관련근거

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확정)

나. 법무처-2019호(2017. 9. 29.) 『제2017-1호 사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』

2. 중요소송 대상금액 조정 등 소송사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가. 주요내용

○ 중요 소송 및 화해 대상금액 조정 (20억원→30억원)(제4조제1호)

- 서울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중요소송 및 소송심의회 대상금액과 동일

○ 소송대리인 위임보수 지급기준 변경 (제42조 관련 별표2)

- 기존 일정범위의 지급기준에서 지급범위내 중간금액 등을 고려한 고정액 으로 변경

○ 소송심의회 위원 변경 : 본부장급→처장급(제53조제1항, 제3항)

- 위원을 본부장에서 본부별 주무처장 또는 사건유관 부서장으로 변경  
- 위원장 유고 시 업무대행 조항 삭제

나. 절 차 :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→ 사장결재(확정) → 시행

붙 임 :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1부. 끝.

과장 도금수

처장 엄익철

실장 오재강

사장 10/11  
김태호

협조자

일상감사 경유 NO (197) / 2017-10-11 08:53:25 / 경영감사처 / 정희윤

시행 법무처-2076 (2017. 10. 11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084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